

금강대학교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 개정(안) 심의서

1. 관련

- 교학팀-1481(2026.01.20.) 2025학년도 제7차 장학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
- 교학팀-1501(2026.01.22.) 2025학년도 제8차 장학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
- 교학팀-1558(2026.01.29.) 2025학년도 제9차 장학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

2. 규정 개정 취지

- 장학금 수혜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장학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
- 2026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선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신·편입생 대상 장학금 신설을 통한 생활비 부담 경감 및 학업 성취도 향상 유도
- 복지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및 장애등급 변동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
- 본교 대학교 설립 중단인 대한불교천태종 승려 및 초청 승려에 대한 장학 제도 신설을 통한 학업 의지 고취

3. 개정 주요 내용(주요 골자)

| 구분 | 개정 주요 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규정 개정 | <p>○ 제17조(지급결정 유효기간) 제1항</p> <p>- 제1항 단서조항 문구 변경 및 제3항 삭제를 통한 장학금 수혜기간 기준 명확화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변경 전</td> <td colspan="2">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장학금은 아래와 같다.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 유 발 생 일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유 효 금 액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학금 전액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</td> </tr> </table> <p>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입대, 질병, 육아, 장기인턴십, 창업 휴학 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이 복학 학기까지 유효하다.(증빙서류 필요)</p> <p>③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</p> | 변경 전 |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장학금은 아래와 같다. | | 사 유 발 생 일 | 유 효 금 액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 | 장학금 전액 |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| 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| | | |
| | 변경 전 | |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장학금은 아래와 같다.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 유 발 생 일 | | | 유 효 금 액 | | | | | | | | | | | |
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 | | 장학금 전액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| 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p>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 장학금은 아래와 같다.<개정 2026.0.0.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변경 후</td> <td colspan="2">사 유 발 생 일</td> <td colspan="2">유 효 금 액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학금 전액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</td> </tr> </table> <p>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입대, 질병, 육아, 장기인턴십, 창업 휴학 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이 복학 학기까지 유효하다.(증빙서류 필요)</p> <p>③ 삭제<개정 2026.0.0.></p> | 변경 후 | 사 유 발 생 일 | | 유 효 금 액 |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 | | 장학금 전액 |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| | 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| |
| 변경 후 | 사 유 발 생 일 | | 유 효 금 액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 | | 장학금 전액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| | 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| | | | | | | | | | | |

| | |
|-----|--|
| | <p>○ (별표1) 장학금의 종류 · 자격 · 지급금액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6학년도 이후 신·편입생 대상 "천태 금강장학금C" 신설 - 복지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(신입생 →신·편입생) 및 "학기 중 장애등급 변동 시 변경된 등급 적용" 문구 추가 - 대한불교천태종 승려 및 초청 승려 대상 "천태 승려 장학금" 신설 |
| 시행일 | · 2026년 00월 00일부터 적용 |

4. 신규대조표

| 현행 | | | | 개정(안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|--|----|-----------|--|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제5장 장학금 지급</p> <p>-중략-</p> <p>제17조(지급결정 유효기간) ① 장학금 지급 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장학금은 아래와 같다. <개정 2020. 3. 1.>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사 유 발 생 일</th> <th>유효 금액</th> </tr> <tr> <td>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</td> <td>장학금 전액</td> </tr> <tr> <td>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</td> <td>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</td> </tr> </table> <p>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입대, 질병, 육아, 장기인턴십, 창업 휴학 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이 복학 학기까지 유효하다.(증빙서류 필요)</p> <p>③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</p> <p>-중략 (별표 1) 장학금 종류 · 자격 · 지급금액 -중략-</p> | | | | 사 유 발 생 일 | 유효 금액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 | 장학금 전액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| 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| <p>제5장 장학금 지급</p> <p>-중략-</p> <p>제17조(지급결정 유효기간) ① 장학금 지급 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 <u>다만, 해당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장학금은 아래와 같다.</u> <개정 2020. 3. 1., <u>2026.0.0.</u>>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h>사 유 발 생 일</th> <th>유효 금액</th> </tr> <tr> <td>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</td> <td>장학금 전액</td> </tr> <tr> <td>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</td> <td>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</td> </tr> </table> <p>② 좌동</p> <p><u>③ 삭제<2026.0.0.></u></p> <p>-중략 (별표 1) 장학금 종류 · 자격 · 지급금액 -중략-</p> | | | | 사 유 발 생 일 | 유효 금액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 | 장학금 전액 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| 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|
| 사 유 발 생 일 | 유효 금액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 | 장학금 전액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| 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 유 발 생 일 | 유효 금액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 | 장학금 전액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| 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종 류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 종 류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금강인재장학금 | A <신설 2025. 8. 1.> 불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 함양 및 세계적 역량인재양성 등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충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 |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- 3.20 이상: 등록금 전액면제 <개정 2024. 1.12.> - 2.90 이상: 등록금 50% 면제 <개정 2024. 1. 12.> * 단, 해외 교환학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| | 금강인재장학금 | A <신설 2025. 8. 1.> 불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 함양 및 세계적 역량인재양성 등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충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 |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- 3.20 이상: 등록금 전액면제 <개정 2024. 1.12.> - 2.90 이상: 등록금 50% 면제 <개정 2024. 1. 12.> * 단, 해외 교환학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종 류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 종 류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
|--|--|--|---|--|--|---|--|
| B <신 설 202 5. 8. 1.> | 입학 당시 만 50세 이상이며 천태중 신자인 학부 2학년 이상인 재학생 단,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이 2.00 이상 (천태중 신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교학지원처에서 판단 <신설 2025. 8. 1.> | 전액면제 (단, 학교 재정 여건 또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) <신설 2025. 8. 1.> | 정규 학기 내 <신설 2025. 8. 1.> | B <신 설 202 5. 8. 1.> | 입학 당시 만 50세 이상이며 천태중 신자인 학부 2학년 이상인 재학생 단,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이 2.00 이상 (천태중 신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교학지원처에서 판단 <신설 2025. 8. 1.> | 전액면제 (단, 학교 재정 여건 또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) <신설 2025. 8. 1.> | 정규 학기 내 <신설 2025. 8. 1.> |
| -중략- | | | | -중략- | | | |
| | | | | C <신 설 2026 .0.0. > | <u>2026학년도 이후 신·편입생으로 입학한 자(졸업시까지) 단, 학자금 지원 (국가장학금 I·II형)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함. <신설2026.0.0.></u> | <u>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- 4.00 이상: 기숙사비 및 식비 총액의 20% 면제 - 3.70 이상: 기숙사비 및 식비 총액의 10% 면제<신설2026.0.0.></u> | - |
| -중략- | | | | -중략- | | | |
| 종 류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 종 류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
| 복지 장학 금 | A 신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개정 2024. 1. 12.> | 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 <개정 2024. 1. 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 비제외) 면제 | 2012 학년 이후 | A <u>신·편입생으로</u>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개정 2024. 1. 12., <u>2026.0.0.</u> > | 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 <개정 2024. 1. 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 비제외) 면제 | 2012 학년 이후 | (<u>학기 중 장애 등급 변동 시 변경 된 등급 적용</u>) <신설 2026. 0.0.> |
| | B 신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개정 2024. 1. 12.> | 2년간(4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 <개정 2024. 1. 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 비제외) 면제 | | B <u>신·편입생으로</u>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개정 2024. 1. 12., <u>2026.0.0.</u> > | 2년간(4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 <개정 2024. 1. 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 비제외) 면제 | | |
| -중략- | | | | -중략- | | | |
| 종 류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 종 류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
| 사생회장 학금<신설 2024. 1. 12.> | 해당 학기 사생회 총장으로 선발된 자 <신설 2024. 1. 12.> | 매월 30만원 지급 (단, 학기 중에 한하 며, 방학은 제외. 또 한 매월 사생회 활 동보고서를 교학지 원처에 제출하여야 함) <신설 2024. 1. 12.> | 학기 당 3명 이내< 신설 2024. 1. 12.> | 사생회장 학금<신설 2024. 1. 12.> | 해당 학기 사생회 총장으로 선발된 자 <신설 2024. 1. 12.> | 매월 30만원 지급 (단, 학기 중에 한하 며, 방학은 제외. 또 한 매월 사생회 활 동보고서를 교학지 원처에 제출하여야 함) <신설 2024. 1. 12.> | 학기 당 3명 이내< 신설 2024. 1. 12.> |
| -중략- | | | | -중략- | | | |
| | | | | <u>본교 설립 중단인 천태 승려 장학금 <신설 2026. 0.0.></u> | <u>대한불교천태종 승려 또는 초창 승려인 본 학부 입학자에게 학업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<신설 2026.0.0.></u> | <u>졸업시까지 (8학기) - 입학금, 등록금, 기숙비 및 식비 전액 면제 <신설 2026.0.0.></u> | - |
| -중략- | | | | -중략- | | | |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26년 00월 00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17조제1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장학금 지급 규정

| | |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정 | : | 2003. 10. 1. |
| 개 정 | : | 2004. 1. 2. |
| 개 정 | : | 2004. 11. 1. |
| 개 정 | : | 2005. 7. 20. |
| 개 정 | : | 2007. 9. 1. |
| 개 정 | : | 2008. 9. 1. |
| 개 정 | : | 2009. 1. 20. |
| 개 정 | : | 2009. 9. 1. |
| 개 정 | : | 2010. 3. 1. |
| 개 정 | : | 2010. 6. 1. |
| 개 정 | : | 2011. 7. 1. |
| 개 정 | : | 2012. 1. 1. |
| 개 정 | : | 2012. 6. 1. |
| 개 정 | : | 2013. 1. 1. |
| 개 정 | : | 2013. 9. 1. |
| 개 정 | : | 2015. 8. 1. |
| 개 정 | : | 2016. 8. 1. |
| 개 정 | : | 2017. 4. 18. |
| 개 정 | : | 2018. 5. 21. |
| 개 정 | : | 2019. 2. 11. |
| 개 정 | : | 2020. 3. 1. |
| 개 정 | : | 2020. 6. 15. |
| 개 정 | : | 2020. 12. 22. |
| 개 정 | : | 2021. 8. 20. |
| 개 정 | : | 2023. 5. 4. |
| 개 정 | : | 2024. 1. 12. |
| 개 정 | : | 2024. 11. 28. |
| 개 정 | : | 2025. 2. 27. |
| 개 정 | : | 2025. 8. 1. |
| <u>개 정</u> | : | <u>2026. 00. 00.</u> |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6조에 의거하여 각종 장학금을 공정하고, 효율적으로 운영,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4. 1. 12.>

제2조(적용범위) 장학생의 선발기준과 장학금의 지급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관련 법령 또는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제3조(사무분장) 장학업무는 교학지원처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23. 5. 4., 2024. 1. 12.>

제2장 장학위원회

제4조(위원회 설치·구성) ①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과, 효율성을 기하고, 그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 및 기획관리처장을 포함하여, 총 4명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 12. 22., 2023. 5. 4., 2024. 1. 12., 2025. 00. 00.>

- ③ 전항의 교직원은 총장이 추천하고 위원장은 교학지원처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5. 4., 2024. 1. 12.>
- 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2.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
- 3. 지급액의 책정기준 및 배정심사에 관한 사항
- 4. 외부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
- 5. 학생 해외 장학연수에 관한 사항
- 6. 장학금지급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장학에 관한 사항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매학기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② 심의사항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제3장 장학금의 종류·신청자격·지급금액

제7조(장학금의 종류 · 자격 · 지급금액) ① 장학금의 종류, 자격 및 지급금액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확정된 지급금액이라도 외부장학금을 수혜할 경우에는 외부장학금을 우선하여 확정된 지급금액에서 외부장학금만큼 차감한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한다.

② 외부장학금은 국가기관, 사회단체 및 기업체 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하며 이는 각 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③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 총액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별표 1에 기재된 근로장학금, 외부지정장학금, 학업 장려 등을 위해 명시된 장학 혜택은 예외로 적용한다.

④ 별표1에 명시되지 않은 장학금의 종류 · 자격 · 지급금액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

제8조(장학생의 자격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.

- 1.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벌이 해제된 후 한 학기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2. 기타 학칙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 자격을 제한한 자
- 3.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
 - 가. 1학기 내지 6학기 : 15학점 미만. 다만, 성적경고(예비성적경고)자, 해외교환학생과견자는 12학점 미만
 - 나. 7학기 : 9학점 미만
- 4. 삭제 <2020. 12. 22.>

제4장 장학금 선발

제9조(장학금의 신청) ① 각종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발생 이후 학기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5. 4., 2024. 1. 12.>

1. 보훈장학금 : 수업료 면제대상 증명서 1부 <개정 2024. 1. 12.>
2. 북한이탈주민장학금 :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
3. 국가고시장학금 : 국가고시 합격증 사본 1부
4. 기타 교학지원처에 신청을 요하는 장학금 : 해당 구비서류 1부

제10조(지급계획서의 심의와 승인) 삭제

제11조(장학생의 확정) 교학지원처는 수혜대상 학생에 대하여 자격요건, 이중추천 여부, 지급기준액 등을 검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.<개정 2023. 5. 4., 2024. 1. 12.>

제12조(장학생 공고) 삭제 <2023. 5. 4.>

제13조(장학증서 발급) 교학지원처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증서를 발급하고, 이를 장학증서발급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. <개정 2023. 5. 4., 2024. 1. 12.>

제5장 장학금 지급

제14조(지급방법) ① 장학금의 지급은 등록금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감면금액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매월 지급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각종 장학금에 이중으로 선발되는 경우 해당 장학금 중 지원금액이 많은 장학금만 지급한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장학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③ 해외연수장학금 및 해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등 해외대학(원)의 학습 명목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한화로 지급한다. 단 환율은 지급하는 달의 첫째 날 최고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. <신설 2024. 1. 12.>

제15조(현금지급 금지) 장학금은 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도서구입비 및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6조(등록금의 환불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장학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한다.

1. 장학생으로 확정된 학생이 이미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
2. 등록기간 후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

제17조(지급결정 유효기간)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휴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장학금은 아래와 같다. <개정 2020. 3. 1., 2026.0.0.>

| 사 유 발 생 일 | 유 효 금 액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이전 | 장학금 전액 |
| 미등록 휴학기간 경과 후 | 학칙 제25조 등록금 반환기준 적용 |

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입대, 질병, 육아, 장기인턴십, 창업 휴학 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전액이 복학 학기까지 유효하다.(증빙서류 필요)

③ [삭제<개정 2026.0.0.>](#)

제18조(지급결과 보고) 교학지원처장은 장학금지급결과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5. 4., 2024. 1. 12.>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기숙사비 관련 사항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각 장학금의 성적 기준 적용은 2010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, 원각불교장학금은 201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다만, 원각불교장학금 관련 사항은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23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경과조치)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기준 신설(2024. 1. 12..) 이전 입학생에 대하여 세계 유명 대학의 기준은 입학년도 당시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(공지)를 따른다. 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선발인원은 연간 1명 이내로 한다. (단, 입학년도에 선발 공고가 미공고된 경우 직전년도 공고(공지)를 따른다.)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26년 00월 00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제17조제1항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(별표 1) 장학금 종류 · 자격 · 지급금액<개정 2024. 1. 12., 2025. 2. 27., 2025. 8. 1.>

| 종 류 |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입생장학금 | 원각불교 장학금 |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(1학년 1학기에 한함) | 수업료 전액면제<개정 2024. 1. 12.> | |
| | 전교수석 장학금 | 항목 삭제 | | 2011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|
| | | 전교 수석입학자. 단,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.50 이상<개정 2024. 1. 12.> | 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 1. 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 - 학업장려금 지원(연간 150만원) | 2020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(기수혜자 혜택 유지) |
| | 수시우수 장학금 | 수시모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단,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.50 이상<개정 2024. 1. 12.> | 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 1. 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 | 2021학번 이후 |
| | 수능성적 우수 장학금 | 항목 삭제 | | 2011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|
| A 수능 국어, 영어, 수학 영역 중 2개영역이 1등급 이내인 자. 단,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.50 이상<개정 2024. 1. 12.> | | 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 1. 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 - 학업장려금 지원(연간 100만원) | 2020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 (기수혜자 혜택 유지) | |
| 정시우수 장학금 | 정시모집 수능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. 단,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.50 이상<개정 2024. 1. 12.> | 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 1. 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 | 2021학번 이후 | |
| 금강인재 장학금 | 학업최우수 장학금 | 매학기 각 학부(전공)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. 단,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.20 이상<개정 2024. 1. 12.> (직전학기 교환학생은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) | 해당 학기 - 등록금 전액면제 - 학업장려금 지원(20만원) | |
| | 비교과참여장려 장학금 | 삭제<2023. 5. 4.> | 삭제< 2023. 5. 4.> | 2023학년도 1학기부터 <개정2023. 5. 4.> |
| | 천태 금강 장학금 | A <신설 2025. 8. 1.> 불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 함양 및 세계적 역량의 인재양성 등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충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 |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- 3.20 이상 :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 1. 12.> - 2.90 이상 : 등록금 50% 면제 <개정 2024. 1. 12.> * 단, 해외 교환학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| |
| | | B <신설 2025. 8. 1.> 입학 당시 만 50세 이상이며 천태종 신자인 학부 2학년 이상인 재학생 단,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이 2.00 이상 (천태종 신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인정여부는 교학지원처에서 판단 <신설 2025. 8. 1.> | 전액면제(단, 학교 재정 여건 또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) <신설 2025. 8. 1.> | 정규학기 내 <신설 2025. 8. 1.> |
| C <신설 2026.0.0.> | <u>2026학년도 이후 신·편입생으로 입학한 자(졸업시까지)</u> <u>단, 학자금 지원(국가장학금 I·II형)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함.<신설2026.0.0.></u> | <u>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</u> <u>- 4.00 이상: 기숙사비 및 식비 총액의 20% 면제</u> <u>- 3.70 이상: 기숙사비 및 식비 총액의 10% 면제</u> <u><신설2026.0.0.></u> | | |

| 종 류 |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|---|
| 금강복지장학금 (편입생) | | 편입생으로 입학한자로서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충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 | 등록금 전액면제(3학년 1학기에 한함)<개정 2024. 1. 12.>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- 3.00 이상 : 등록금 전액면제(3학년 2학기에 한함, 이후 천태금강장학금 기준에 따름)<개정 2024. 1. 12.> | 2021학번 이후 편입생에 한함 |
| 국가고시 장학금 | A | 재적 중 국가고시(5급 공채, 공인회계사, 관세사, 세무사, 노무사, 변리사 등) 1차 시험 이상 합격한 자 | 사유발생 다음 학기부터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,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급(1회에 한함) 단, 휴학생은 복학 후 지급 | |
| | B | 재학 중 국가고시 준비반 입반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. - 모의고사 및 성적우수자 - 교수 추천자 단,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.30 이상<개정 2024. 1. 12.> | 매학기 인원을 산정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| |
| 공로장학금 | | 총학생회, 학교부속기관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. 단, 활동기간의 매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.20 이상<개정 2024. 1. 12.> | 사유발생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려금 지급 - 총학생회장 : 50만원 - 총학생회 부회장: 30만원 - 그 외 : 20만원 <개정 2024. 1. 12., 2025. 2. 27.> | 총학:2명 부속기관 및 학생자치기구:2명 이내 <개정 2025. 2. 27.> |
| 봉사장학금 | |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. | 봉사활동실적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| |
| 학술활동 장학금 | | 교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. | 해당학기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| |
| 해외연수 장학금 | | - 「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 - 「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」에 의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 단, 복수학위 과정 연수 후 본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(관련 학비 지원지침 적용) | 「국내 및 해외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」, 「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」 및 대외교류위원회 심의에 근거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| |
| 외국인학생 장학금 | | 학교 또는 재단 초청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학생. 단, 직전학기 성적이 3.00 이상<개정 2024. 1. 12.> | 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 1. 12.> - 학업장려금 지원(연간 120만원) | |
| 근로장학금 | |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. 단,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.00 이상<개정 2024. 1. 12.> 학교 의무 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선발(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, 자살 예방교육, 인터넷중독 예방교육, 장애인식 개선교육) |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| |
| 보훈장학금 |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<개정 2024. 1. 12.> - 신입생: 해당자 - 재학생: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※단,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 | 졸업시까지(8학기) - 국가유공자 본인: 등록금 전액 - 국가유공자(손)자녀: 등록금 전액(본교 및 국고 각 50%부담) | |
| 교육보호 장학금 | | | 항목 삭제 | |

| 종 류 | | 수혜자격 | 지급금액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| |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(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후 관련 해당 서류 제출) | 등록금 전액(학교 50%, 국고 50%) - 수업료 8개 학기(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) <개정 2024. 1. 12.> -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당해 학기 보조를 제한하며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에 포함함 | 2021학번 이후 |
| | |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제3국출생 탈북자녀인 자 ※ 단,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(기본증명서 상 “국적선택”란에 “대한민국”으로 명시되고 “법무부장관”에 통보된 자) |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- 3.20 이상 : 등록금 전액면제 - 2.90 이상 : 등록금 50% 면제 <개정 2024. 1. 12.> | 2021학번 이후 |
| 복지 장학금 | A | 신·편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개정 2024. 1. 12., 2026.0.0. > | 졸업시까지(8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 1. 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 | 2012학번 이후 (학기 중 장애등급 변동 시 변경된 등급 적용) <신설 2026.0.0.> |
| | B | 신·편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<개정 2024. 1. 12., 2026.0.0. > | 2년간(4학기) - 등록금 전액면제<개정 2024. 1. 12.> - 기숙사비 전액(식비제외) 면제 | |
| 기여장학금 | | 학업장려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 | 유치 외부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금액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<개정 2020.12.22.> | 2020학년도 이전 신·편입생 |
| | | 학업장려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 | 유치 외부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 <개정 2020.12.22> | 2021학년도 이후 신·편입생 <개정 2023. 05.01., 2025. 2. 27.> |
| | 사생회장학금<신설 2024. 1. 12.> | 해당 학기 사생회 증장으로 선발된 자<신설 2024. 1. 12.> | 매월 30만원 지급(단, 학기 중에 한하며, 방학은 제외. 또한 매월 사생회 활동보고서를 교학지원처에 제출하여야 함) <신설 2024. 1. 12.> | 학기당 3명 이내<신설 2024. 1. 12.> |
| | 천태 승려 장학금 <신설 2026.0.0.> | 본교 설립 종단인 대한불교천태종 승려 또는 초청 승려인 본 학부 입학자에게 학업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<신설 2026.0.0.> | 졸업시까지 (8학기) - 입학금, 등록금, 기숙비 및 식비 전액 면제 <신설 2026.0.0.> | - |
| 금강 우수 졸업 진학 장학금 | 해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| 해외우수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3의 기준에 충족하는 자.<개정 2024. 1. 12.> | 지급기간은 2년이며 연간 영어권 14,000USD, 일어권 10,000USD, 중어권 7,000USD 지급 | 연간 10명 이내 |
| |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| 본교가 정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. 단, 졸업성적평점평균이 4.00 이상.<개정 2024. 1. 12.> (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 지침 적용) | 지급기간은 3년이며 연간 1,000만원 지급 | 연간 2명 이내 |
| 외부 장학금 | 기부장학금 | 기부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. | 기부장학금의 유형에 따라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| |
| | 보훈장학금 |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<개정 2024. 1. 12.> - 신입생: 해당자 - 재학생: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※단,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 | 졸업시까지(8학기) - 국가유공자 본인: 등록금 전액 - 국가유공자(손)자녀: 등록금 전액(본교 및 국고 각 50%부담) | |
| | 교육보호 장학금 (북한이탈주민) |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(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후 관련 해당 서류 제출) | 등록금 전액(학교 50%, 국고 50%) - 수업료 8개 학기(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) <개정 2024. 1. 12.> -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당해 학기 보조를 제한하며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에 포함함 | |

* 계속 장학생의 경우(전교수식 수시우수수능성적우수·정시우수장학금) 수혜자격 미달 시 졸업까지 해당 장학금 지급 중단 <개정 2024. 1. 12.>

(별표 2) 천태금강장학금 선발 기준<개정 2024. 1. 12., 2025. 2. 27., 2025. 8. 1.>

| 평가항목 | 매학기 기준 | 세부내용 |
|--|---|---|
| 비교과활동 | 매학기 기획조정팀에서 인정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하는 학생 <개정 2023. 5. 4., 2025. 8. 1.> | 학생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기획조정팀에서 확인 <개정 2023.05.01., 2025. 8. 1.> |
|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 | 10 GOLD 당 0.1점으로 환산하여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과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장학생 선발 기준 이상 | GOLD사용신청서를 기획조정팀에 제출<개정 2023. 5. 4., 2025. 8. 1.> |
| GGU콘서트 참여 <개정 2023. 5. 4., 2025. 2. 27.> | GGU콘서트 참여율이 70%미만 시 장학생 선발 제외 <개정 2023. 5. 4., 2025. 2. 27.> | 교학지원처 출석 확인 및 출석 통계 정리 <개정 2023. 5. 4., 2025. 2. 27.> |
| 시험부정행위 | 부정행위는 1회이상 적발 시 선발제외 | 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 시 적용 (학생상별위원회 회부) |
| 학칙위반 및 평소품행 | 학생상별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| 학생상별에관한규정 적용 |

* 학사경고자의 경우 학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학습지원 프로그램 미이수 시 장학생 선발에 제한될 수 있음<신설 2024. 1. 12..>

(별표 3)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기준<신설 2024. 1. 12.>

| 구분 | 세부내용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|--|---|-----|---|
| 지원기간 |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중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지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지원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.80 이상인 자로 학칙에 따라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- 대학 졸업 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석사과정: 2년(군 복무기간 제외)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. 박사과정: 4년(군 복무기간 제외)이 경과하지 않은 자 (단,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) - The Times 기준 World University Ranking 100위 이내의 해외우수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 (해당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진입한 대학) - 유학국 별 지정 외국어시험 성적 취득자(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점수에 한함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국가</th> <th>시험명</th> <th>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영어권</td> <td>TOEFL</td> <td>iBT 88이상 / PBT 570이상</td> </tr> <tr> <td>IELTS</td> <td>Overall Band Score 5점 이상</td> </tr> <tr> <td>유럽어권</td> <td colspan="2">해당 국가의 공인된 외국어시험 합격자</td> </tr> <tr> <td>일본어권</td> <td>JLPT</td> <td>* 일본어 관련 전공자 : JLPT 1급(N1) 이상 또는 JPT 715점 이상 * 일본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: JLPT 2급(N2) 이상 또는 JPT 540점 이상</td> </tr> <tr> <td>중국어권</td> <td>HSK</td> <td>* 중국어 관련 전공자 : (신)6급 * 중국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 : (신)5급 210점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국가 | 시험명 | 기준 | 영어권 | TOEFL | iBT 88이상 / PBT 570이상 | IELTS | Overall Band Score 5점 이상 | 유럽어권 | 해당 국가의 공인된 외국어시험 합격자 | | 일본어권 | JLPT | * 일본어 관련 전공자 : JLPT 1급(N1) 이상 또는 JPT 715점 이상 * 일본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: JLPT 2급(N2) 이상 또는 JPT 540점 이상 | 중국어권 | HSK | * 중국어 관련 전공자 : (신)6급 * 중국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 : (신)5급 210점 이상 |
| 국가 | 시험명 | 기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영어권 | TOEFL | iBT 88이상 / PBT 570이상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IELTS | Overall Band Score 5점 이상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유럽어권 | 해당 국가의 공인된 외국어시험 합격자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일본어권 | JLPT | * 일본어 관련 전공자 : JLPT 1급(N1) 이상 또는 JPT 715점 이상 * 일본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: JLPT 2급(N2) 이상 또는 JPT 540점 이상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국어권 | HSK | * 중국어 관련 전공자 : (신)6급 * 중국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 : (신)5급 210점 이상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제출서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금 신청서 1부. - 자기소개서 1부. - 연구계획서 1부. - 유학국별 지정 외국어 성적표 사본 1부. - 해외대학원 입학허가서 및 등록 관련 서류 각 1부. - 기타 장학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선발절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학위원회에서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장학생 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심사하며, 면접평가를 통해 연간 10명 이내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 - 장학위원 전체 평균 점수가 70점 이하인 지원자는 선발에서 제외한다. - 면접점수의 최저, 최고점은 제외하고 평균 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한다. - 장학생 선발 후 최초 장학금 지급 전 대학 변경에 대한 타당한 사유 발생 시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장학금지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학금은 연간 지급액을 상·하반기 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. 단 1년 3학기제의 경우 예외로 한다. - 최초지급액은 입학허가서를 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급하고, 차기 장학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- 언어권별 장학금 지급금액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.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국가</th> <th>지급기간</th> <th>연간지급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영어권·유럽어권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4,000\$</td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위과정이 1년 3학기제인 경우 (연간지급액/2)*3회로 지급</td> </tr> <tr> <td>일본어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000\$</td> </tr> <tr> <td>중국어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7,000\$</td> </tr> <tr> <td>기타 언어권</td> <td>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정부 국비유학 장학생의 지급금액을 참고하여 그 금액이 유사한 언어권의 지급액을 지급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| 국가 | 지급기간 | 연간지급액 | 비고 | 영어권·유럽어권 | 2년 | 14,000\$ | 학위과정이 1년 3학기제인 경우 (연간지급액/2)*3회로 지급 | 일본어권 | 10,000\$ | 중국어권 | 7,000\$ | 기타 언어권 | | 한국정부 국비유학 장학생의 지급금액을 참고하여 그 금액이 유사한 언어권의 지급액을 지급 | | |
| 국가 | 지급기간 | 연간지급액 | 비고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영어권·유럽어권 | 2년 | 14,000\$ | 학위과정이 1년 3학기제인 경우 (연간지급액/2)*3회로 지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일본어권 | | 10,000\$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중국어권 | | 7,000\$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기타 언어권 | | 한국정부 국비유학 장학생의 지급금액을 참고하여 그 금액이 유사한 언어권의 지급액을 지급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장학금 지급제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학금 지원기간 중 학업성적이 80/100점만점 미만일 경우 차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 - 휴학 시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복학하는 학기에 재지급한다. - 외부장학금 수혜 시 이중지원이 가능하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장학금 환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학금 지급 후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한다. - 장학금 수혜기간 중 자퇴, 제적 등을 포함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기타사항 | -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.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